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해외취업목적의 해외체류 수급자의 실업인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재이직한 경우 이직사실 통보 근거를 마련하며, 조기재취업 수당 적용 대상자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하고, 자영업 등으로 취업한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안 제29조제6항)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 취업목적 해외체류자 실업인정 특례 근거 마련(안 제65조제10호 신설)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 체류 수급자를 실업인정 특례 대상으로 명시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후 이직한 경우 이직사실 통보 근거 마련

(안 제6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취업사실을 신고한 수급자가 수급기간 내에 다시 이직한 경우 이직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라. 병역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적용 제외(안 제84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병역법」에 따라 병역복무 의무가 발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자영업 등으로 취업한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절차 간소화(안 제84조제1항제2호)

자영업자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수급기간 중 사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단서 조항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제1호 중 “경우에”를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5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

제69조의 제목 “(취업의 신고)”를 “(취업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수급기간 내에 다시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수급자격자에게 이직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7일을 경과하여 이직 사실을 알린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그 알린 날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알려야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을 삭제한다.

마.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업인정의 특례자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 등의 신고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 신고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적용례) 제84조제1항제1호 마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 ⑤ (생략)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⑥ ----- -----.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u>경우에</u>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1. ----- ----- ----- ----- ----- ----- ----- ----- ----- ----- ----- <u>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u> 에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 ----- -----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9. (생략) <u><신설></u>	----- -----. 1. ~ 9. (현행과 같음) 10. <u>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u>
제69조(<u>취업의 신고</u>) ① (생략) ② 삭제 <u><신설></u> <u><신설></u>	제69조(<u>취업 등의 신고</u>) ①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수급기간 내에 다시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u> ④ <u>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수급자격자에게 이직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7일을 경과하여 이직 사실을 알린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그 알린 날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알려야 한다.</u>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

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라. (생략)

<신설>

준) ① -----

-----.

1.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생략)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

2. -----

--. <후단 삭제>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2